

의안번호	2204079
의 퇴 인	최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 10. 17.
추 계 번호	24B3837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성과확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성과확산에 관한 세부활동 및 대상·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연구성과창업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0억 3,000만원(연평균 4억 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325	0	0	325	0	650	130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130	130	130	130	130	650	130
창업 실태조사 수행 (안 제18조)	146	146	146	146	146	730	146
계	601	276	276	601	276	2,030	406

주: 1. 향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비 증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1. 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지속적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유형별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확산사업의 추진 3.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활동의 지원 4. 연구성과창업 활성화 및 관련 제도의 마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성과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과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확산기본계획”이라 함)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1.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성과확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성과확산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연구성과창업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성과확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확산에 관한 세부활동 및 대상·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성과확산시행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과확산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을 양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성과확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과정에 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과정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3항)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조(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의 배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조직을 설치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7	안 제10조(성과확산 사업의 추진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성과확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1. 연구개발기관의 학술활동 지원 2. 연구개발기관의 후속연구 지원 3. 연구개발성과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연구개발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지원 5. 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 성과 확산 지원 6. 성과확산을 위한 인력교류 지원 7. 그 밖의 성과확산과 관련된 활동 지원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확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성과확산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확산 사업의 기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 연구개발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2. 그 밖에 성과확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1조(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설립)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사업화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화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연구성과 창업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1.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연구성과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또는 출자 등 4. 연구성과창업 준비, 창업 초기 및 중기 등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5. 연구성과창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연구성과창업 생태계 조성 7. 연구성과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창업문화 확산 8. 연구성과창업에 따른 공정한 성과 배분	의무규정
10	안 제16조(연구개발 성과의 출자 등)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성과창업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자금 등을 출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성과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출자와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17조(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성과창업기업으로부터 해당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성과창업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부서 등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2	안 제18조(연구성과 창업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성과확산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창업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3	안 제23조(권한의 위 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 제10조, 제1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정부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규정								
2	안 제5조(성과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6조(성과확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7조(연구개발기관의 성과 확산 지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								
5	안 제8조(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제정안의 성과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시행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향후 수요에 따라 필요한 교육시설 및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그 수요와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 곤란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td><td style="text-align: center;">2,805</td><td style="text-align: center;">3,600</td><td style="text-align: center;">4,450</td></tr> </tbody>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2022	2023	2024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2,805	3,600	4,450
사업명	2022	2023	2024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2,805	3,600	4,45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9조(성과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10조(성과확산 사업의 추진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조항은 기존의 성과확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 제정에 따른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발굴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중앙행정기관의 수요에 따라 추진하게 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현재로서는 예측 곤란 - 현재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후속연구개발 지원, 실증 및 사업화, 연구성과창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공공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사업별 최근 3년 예산 현황 참고자료 첨부)								
8	안 제11조(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2012년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으로 운영 중으로 2023년 이후 약 50억원의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중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관리사업</td><td>-</td><td>5,083</td><td>5,029</td></tr> </tbody> </table> 주: 개별사업 내역으로 편성·지원되던 기획평가관리 사업을 '22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관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2022	2023	2024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관리사업	-	5,083	5,029
사업명	2022	2023	2024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관리사업	-	5,083	5,029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2조(연구성과창업의 촉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연구성과창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마련에 따라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시책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연구성과창업 촉진 사업으로는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산학연 협력활성화지원 사업 등이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tr> <th colspan="2">세부/내역 사업명</th> <th>2022</th> <th>2023</th> <th>2024</th> </tr> <tr> <td rowspan="4">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td> <td>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td> <td>-</td> <td>10,650</td> <td>5,325</td> </tr> <tr> <td>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td> <td>-</td> <td>13,780</td> <td>5,500</td> </tr> <tr> <td>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지원사업</td> <td>-</td> <td>4,800</td> <td>-</td> </tr> <tr> <td>연구성과활용 원스톱창업 지원사업</td> <td>-</td> <td>963</td> <td>-</td> </tr> <tr> <td rowspan="3">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td> <td>산학연 공동연구법인지원</td> <td>-</td> <td>670</td> <td>-</td> </tr> <tr> <td>공공연구성과 BIG선도모델</td> <td>-</td> <td>6,700</td> <td>1,400</td> </tr> <tr> <td>산학연협력 기술창업법인지원</td> <td>-</td> <td>2,960</td> <td>1,488</td> </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내역 사업명		2022	2023	2024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	-	10,650	5,325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	-	13,780	5,500	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지원사업	-	4,800	-	연구성과활용 원스톱창업 지원사업	-	963	-	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지원	-	670	-	공공연구성과 BIG선도모델	-	6,700	1,400	산학연협력 기술창업법인지원	-	2,960	1,488
세부/내역 사업명		2022	2023	2024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	-	10,650	5,325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	-	13,780	5,500																																		
	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지원사업	-	4,800	-																																		
	연구성과활용 원스톱창업 지원사업	-	963	-																																		
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지원	-	670	-																																		
	공공연구성과 BIG선도모델	-	6,700	1,400																																		
	산학연협력 기술창업법인지원	-	2,960	1,488																																		
10	안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출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창업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자금 등을 출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성과의 출자와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출자 및 이전의 대상,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7조(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연구개발기관에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등을 알 수 없음
12	안 제18조(연구성과창업 실태 조사)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3	안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제8조, 제10조, 제1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알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5조의 성과확산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의 성과확산 시행계획 수립, 안 제18조의 연구성과창업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성과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성과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차년도와 4차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성과확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확산에 관한 세부활동 및 대상·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계획 수립 비용만 반영
 - (연구성과창업 실태조사)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성과확산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창업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므로,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일반현황, 창업현황, 기술현황, 투자유치현황 및 경영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성과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산업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억 5,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억 3,000만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21년에 2억원을,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21년에 4억 5,000만원을 각각 집행한 바 있어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가를 평균값인 3억 2,500만원으로 가정

[표 2] 연구산업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집행액
2021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
2021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연구용역	4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성과확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325	0	0	325	0	650	13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성과확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억 5,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억 3,000만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국가 R&D 혁신 실행력 제고 연구” 용역비로 2019년에 1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 향후 시행계획 수립 용역 단가를 1억 3,000만원으로 가정

[표 4] 과학기술 관련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시행계획	연구용역	집행액
2019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국가R&D 혁신 실행력 제고 연구	13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5] 성과확산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행계획 수립	130	130	130	130	130	650	13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연구성과창업 실태조사(안 제18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 실태조사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7억 3,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억 4,600만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020년에 1억 3,000만 원을,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022년에 1억 6,200만 원을 각각 집행한 바 있어 향후 실태조사 용역 단가를 평균값인 1억 4,600만원으로 가정

[표 6]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실태조사	예산
2020	우주산업실태조사	130
2022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실태조사	16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내용 참조

[표 7] 연구성과 창업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창업기반 실태조사	146	146	146	146	146	730	146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공공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 현황¹⁾

- (관련확산활동) 후속연구개발 지원, 실증 및 사업화, 연구성과창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사업명		2022	2023	2024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	4,830	7,475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	5,240	8,100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R&D		15,300	13,000	744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시범사업		2,000	5,530	1,217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11,831	11,757	-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지역산업연계 Open-Lab 육성	-	8,220	3,700
실험실 창업 지원 사업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	-	10,650	5,325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	-	13,780	5,500
	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지원사업	-	4,800	-
	연구성과활용 윈스톱창업 지원사업	-	963	-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대학기술경영촉진	-	12,260	12,212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지원	-	670	-
	학연연계사업화선도모델	-	-	-
	공공연구성과 BIG선도모델	-	6,700	1,400
	산학연협력 기술창업법인육성	-	2,960	1,488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시범사업		2,528	6,152	2,949
바이오 의료개발 사업	바이오 연구데이터 검증지원	-	2,667	2,667
기업부설 연구소 및 윈스톱 서비스 운영지원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1,200	7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안 제10조 관련